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2. 28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2월 1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5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2월 28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세무2과장 김민중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 중 일부 수수료를 표준 수수료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

나. 주요내용

1)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변경

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표준금액 반영
(총 21건 : 인상 1건, 인하 14건, 신설 6건)

2) 수수료 감면 대상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(안 제6조제1항)

3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이진표)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 『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』(대통령령)이 개정·공포(2012. 9. 22)되어 수수료의 종류가 155종목 에서 27종목이 추가된 총 182종목으로 확대됨에 따라,
- 현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」로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 66종목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과 상이한 수수료 15종목을 변경(인상 1, 인하 14)하고 6종목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표준수수료를 변경하였고, 기타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